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19. 6. 18(화)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 제1차 위원회 -

2019. 6. 18.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 개최계획

1. 개요

□ (일시/장소) '19. 6. 18(화) 12:00~16:00 / 농특위 사무국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16층

□ (참석) 위원장 등 당연직·위촉직 위원 29명(사무부국장 포함)

□ (안건)

○ 의결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안)

○ 보고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2. 세부 일정

시 간(분)	주요 일정	비 고
14:15~14:20(5')	○ 위원장 등 입장	대회의실
14:20~14:25(5')	○ 국민의례(약식)	정책팀장
14:25~14:30(5')	○ 위원장 인사말씀	
14:30~15:00(30')	○ 안건심의 - (의결) 위원회 운영세칙(안) - (보고) 위원회 운영계획(안)	사무국장
15:00~16:00(60')	○ 위촉위원 간담회	대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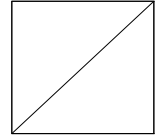
목 차



- 심의안건 2019-1호 1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안)

- 보고안건 13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공 개



의안번호	제 1 호	의 결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19. 6. 18. (제 1 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 출 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박 진 도
제출 연월일	2019. 6. 18.

1. 의결주문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본 운영세칙은 '19. 4. 25 제정·시행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712호)에 따라 위원회·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운영위원회 및 사무국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제2조~제4조)
 -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위원회의 안건 결정, 위원회의 의사 진행, 조정 및 결정 등
 - 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음
-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 등(제5조~제7조)
 - 분과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을 위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
 - 분과위원회 내 특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분과를 둘 수 있음
 - 특별위원회는 특정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존속기간을 정해 구성·운영하며 특별위원의 임기는 각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함

○ 사무국 구성 등(제8조~제9조)

- 사무국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총괄기획팀, 농어업·농어촌 정책팀, 농수산물식품팀, 대외협력팀 등으로 구성하고, 부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 함
- 사무국장을 정책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정책전문위원을 두며 사무국 직원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함.

○ 운영위원회 구성 등(제10조)

- 분과위원회간 협의·조정과 의사일정 협의 및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장, 분과위원장, 사무국장, 사무부국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10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함

【참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조직도(안)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

2019. 6. 18.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제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집 및 운영

2. 위원회의 안건 결정

3. 위원회의 의사 진행, 조정 및 결정

4.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지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 1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사전에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상정에 앞서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안건내용을 검토하게 하거나 조사·연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3조제3항제1호의 당연직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안전 제출) ①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 안전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안전의 보고는 그 안전을 발의한 자가 한다. 다만 발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1명을 대표로 선정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분과위원회

제5조(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분과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단체의 관련 전문가
2.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생활협동조합 등의 관련 전문가
3. 학계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4.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가

② 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분과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분과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분과위원이 법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분과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소분과 구성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특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내 소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소분과의 장(이하 "소분과장"이라 한다)은 소관 분과위원장이 분과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소분과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분과위원회에서 정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특별위원회

제7조(구성 및 운영 등) ① 특별위원의 임기는 각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② 기타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장은 특별위원이 법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는 회의 시 참석자, 논의사항 등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⑤ 특별위원장은 특별위원회 논의사항을 수시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국

제8조(기능) 법 제9조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협의안건의 기획 및 정책개발
2. 위원회 개최 및 회의자료 준비
3. 분과·특별위원회 개최 및 회의자료 준비
4. 위원회, 분과·특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협의·조정
5. 각 위원에 대한 회의 자료의 배포
6. 위원회, 분과·특별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고
7.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평가
8.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 ① 사무국은 총괄기획팀, 농어업·농어촌정책팀, 농수산식품팀, 대외협력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8조에 따른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자문 및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무국장을 정책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정책전문위원을 1명 둔다.

④ 사무국에 부국장을 두며, 부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⑤ 사무국은 국장, 부국장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 및 별도로 채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⑥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무보조, 번역,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
- ⑦ 기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운영

-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분과위원회 간 협의·조정과 의사일정 협의 및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분과위원장, 사무국장, 사무부국장 및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을 겸직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사무국의 총괄 기획팀장으로 한다.
- ⑤ 운영위원회는 논의사항 등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 제11조(경비집행)** ① 위원회 위원, 분과위원, 특별위원 및 전문가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자문에 대한 수당·여비·사례금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연도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조사·연구·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직책수행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법 제10조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인 위원회 파견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인사 및 복무 등) ①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 및 복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 등에 공훈이 많은 자(단체를 포함한다),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무국의 직원에 대하여 훈장·포장·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의 추천 또는 상장·부상의 수여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그 밖의 세부사항) 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팀	
담당자	강문석 연구관
연락처	전 화 : 02-6260-1215 E-mail : gr27@korea.kr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2019. 6. 18.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목 차

I. 설립배경 및 경과	15
II. 운영개요	16
III. 목표와 운영방향	19
1. '농정 틀' 전환을 위한 개혁의제 중심 운영	20
2. 민관 및 범정부 협력 거버넌스 구축	21
3. 농어업계 내외부의 소통 활성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	22
IV. '19년 운영계획[안]	23
V. 향후 주요일정	25

I. 설립배경 및 경과

□ 설립배경

- **현행 경쟁과 효율 위주의 농어업 정책**으로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에 한계
 - 농어업인 소득의 양극화 및 농어촌의 고령화·공동화, 도시·농어촌 격차 심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농정(농어업정책) 틀**’ 전환 필요
-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중심의 정책 전환을 위한 국민적 논의형성과 협의기구로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
 - 현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포함

< 대통령님 말씀 >

- ※ “첫째, 국가 농정의 기본 틀부터 바꾸겠습니다. 현재 농어업·농어촌의 위기는 경쟁과 효율만 강조하고 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농정에 대한 국가철학과 기초를 바꾸겠습니다.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습니다.** 이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17.4, 대선후보 당시 농정공약)
- ※ “법에 따라 쌀 직불금의 목표가격을 다시 정해야 하며, 그와 함께 **공익형 직불제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18.11, 국회 시정연설)

□ 주요 경과

- 농특위 설치·운영 관련 **4건의 법안이 발의***된 후, 이를 종합하여 상임위 소위 심사(안)을 마련(‘17.11), 본회의 의결(‘18.12.7)
 - * 황주홍의원(‘16.7), 이개호의원(‘17.8), 김현권의원(‘17.8), 위성곤의원(‘17.9) 발의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18.12.24)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운영을 위한 **T/F 운영**(‘19.1.14~‘19.4월말)
- **1대 박진도 위원장** 포함 **28인**의 위원으로 위원회 출범(‘19.4.25)

Ⅱ. 운영개요

1. 구성 및 기능

- **목 적** :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 근거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9.4.25 시행)

-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 30명 이내 (현원 28명*, 대통령 위촉)

* (당연직) 기재부·농식품부·해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식약처장

** (위촉직) 농어업인 대표 10인, 시민사회·소비자, 학계 등 전문가 대표 12인

- **기 능**

- 아래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이행 촉구

< 주요 협의 사항 >

-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
-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
-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
- 농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
-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 안전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 또는 법인·단체의 장, 민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키거나 자료 제출 및 의견제시 협조 요청
- **협의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반기별로 운영 실적을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

- **환 류**

- 위원회 의결사항을 통보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실시

2. 본위원회 지원 운영체계

□ 분과위원회

- (체계) 농어업, 농어촌, 농수산물식품 등 3개 분과
- (구성) 분과별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총 60명, 위원장 위촉)
 - * 분과위원장은 (본)위원회의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 (기능) 위원회 상정 **안건의 검토·조정**,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여론 수렴**과 국내외 **조사·연구**,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 분과위원회 소관 의제의 검토·조정을 위해 분과위원으로 소분과를 설치하고 소분과 내에 T/F팀을 구성하여 집중적인 연구·분석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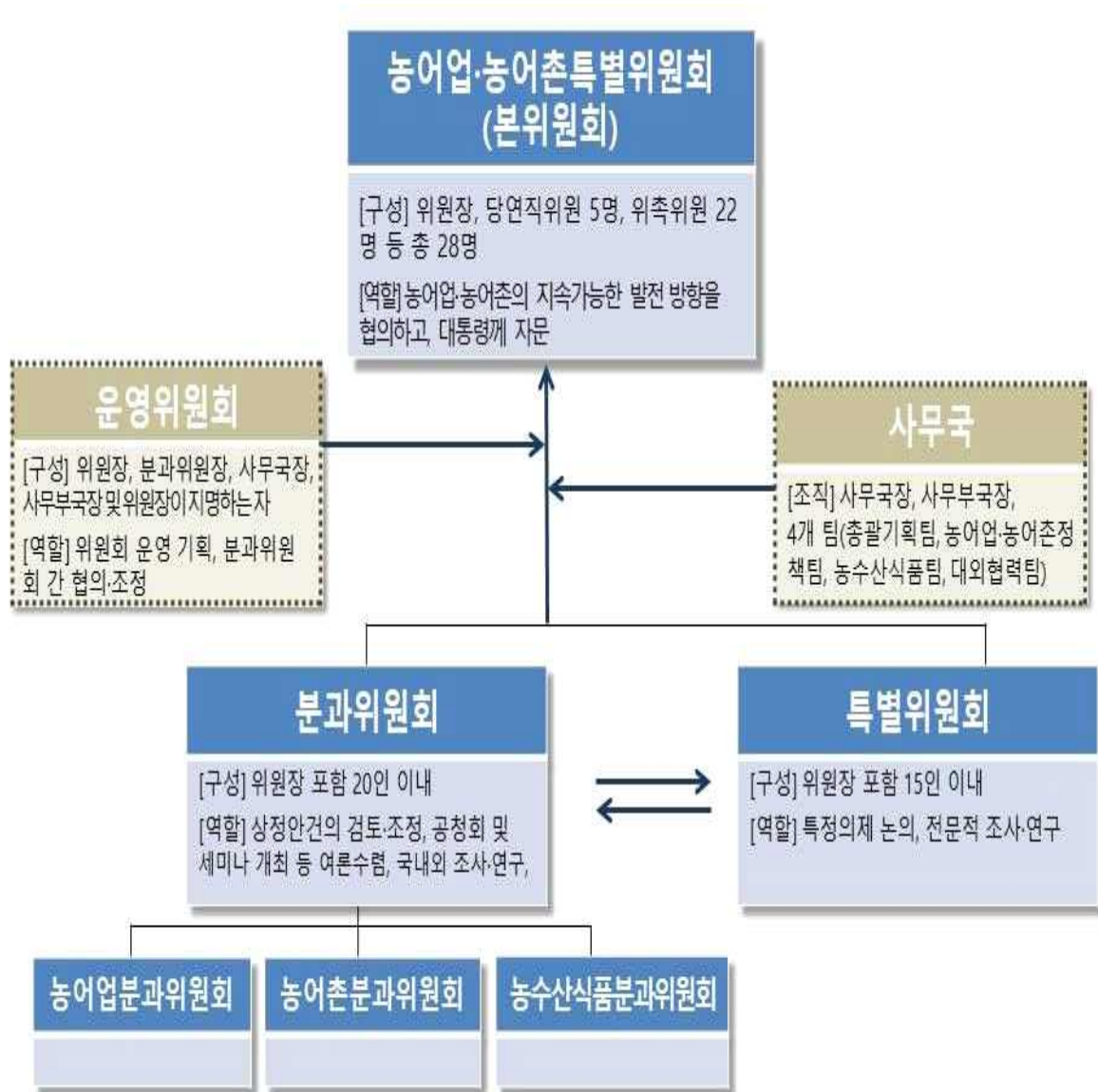
□ 특별위원회

- (구성) 특별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 * 특별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외부 전문가 중 위촉
- (기능) 위원회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 논의**(설치 수 제한 없음)

□ 사무국 및 운영위원회

- (사무국) 위원회 협의안건의 **기획 및 정책개발**, 위원회 및 분과·특별위원회 **회의준비**, 위원회 의결사항 **점검·평가** 등을 위해 설치
 - 사무국장, 사무부국장, 4개 팀 등 26명*
 - *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공공기관 등 파견자 및 특별채용 전문임기제 공무원
- (운영위원회) 위원회 **의사일정 협의**, 분과위원회간 **의제 협의·조정** 등 위원회 운영전반에 대한 **운영지원**(이사회 성격)
 - 위원장, 분과위원장, 사무국장·부국장 및 위원장 지명 등 총 **10명** 이내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체제도 >



(비고) 1. 분과위원회의 소관 의제 관리를 위해 소분과 또는 TF 운영

2. 특별위원회는 특정 현안 중심으로 구성·운영

Ⅲ. 목표와 운영방향

비전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농어업·농어촌

미션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의 구현

목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농정 틀' 전환

핵심
과제

기존 농정 틀의
진단과 평가

농정전환
과제 도출

소통을 통한
국민적 지지 확보

운영
방향

1

'농정 틀' 전환을 위한 개혁의제 중심 운영

2

민관 및 범정부 협력 거버넌스 구축

3

농어업계 내외부의 소통 활성화를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

< 기본방향 >

- ◆ 농정 패러다임 전환 : 경쟁과 효율 중심에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실현
- ◆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농정 틀' 전환

□ 주요 내용

- ('농정 틀' 전환) 기존 농정에 대한 진단·평가와 함께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 실현을 위한 농정의 가치, 대상, 방향, 추진방식 등 주요 의제에 대해 분과위, 특별위, TF 등을 통한 심도 깊은 논의·협의
 - 농어업인 중심에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농정, 농어업·환경·먹거리가 균형을 이루는 농정 실현 등 의제 논의
- (제도개선) 농정 예산구조 개편을 위해 분석·평가를 추진하고, 농정 추진체계 및 관련 법령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추진방법

- (정책연구) 농정 틀 관련 핵심 정책과제 연구(농정예산 분석·평가, 추진체계, 법령정비 등)와 분과위(특별위)·TF 활동 지원을 위한 단기 정책연구 추진
 - 주요 의제에 대한 심층적이고 내실 있는 연구·분석을 위해 소분과 또는 T/F를 구성하여 집중적인 논의
 -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 분과위원을 중심으로 연구 거버넌스를 구축, 정책연구와 분과위 활동을 효과적으로 연계
- (소통 활성화) 연구과정 및 결과가 워크숍, 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방식을 통해 국민적 공감과 이해관계자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도록 연구 기획·운영

< 기본방향 >

- ◆ **민관 협업**을 위해 농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산학연 전문가, 정부 등 **민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 ◆ 여러 부처와의 이견 **조정**과 **합의**가 필요한 의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 강화**

□ 주요 내용

- **(민관 협업)** 국민 모두의 공통된 관심사인 건강한 먹거리, 농어촌 환경 등 의제는 생산·소비·시민단체, 전문가 등 **민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 분과(특별위) 위원에 농림·축산·수산분야 전문가 외 소비자·시민사회 대표자를 위촉하고, **농어업·시민단체** 등과 소통을 위한 **공론의 장**도 마련
- **(범정부 협업)**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범부처 성격의 농어업·농어촌 의제에 대해 부처 간 **협의·조정**을 통한 정부차원의 공동대응
 - 생태환경과 조화로운 농어업활동의 육성,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 모두의 접근성 개선 등

□ 추진방법

- **(민관 협업)** 농어업인과 국민의 입장에서 **현장 중심 개혁농정** 추진을 위해 농어업·소비·시민단체, 일반국민 등과 **공청회** 및 **토론회** 추진
- **(범정부 협업)** 농산어촌정책, 먹거리정책 등 여러 부처에 걸친 의제는 위원회 논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이행** 촉구

< 기본방향 >

- ◆ '농정 틀' 전환 필요성에 대한 농어업계 내부의 소통 활성화
- ◆ 농어업계 외부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주요 내용

- (농어업계) '농정 틀' 전환에 필요한 주요 개혁과제들에 대한 농어업계의 이견 해소와 합의 도출을 위한 소통 활성화
 - 제도 개혁에 따른 농어업계 내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이견 조율과 의견수렴을 통한 합의 방안 마련
- (농어업계 외부) 오피니언 리더그룹, 소비·시민단체 등 농어업계 외부와 소통을 통해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 확산
 - 건강한 먹거리, 다기능 농어업과 새로운 일자리, 남북 농림어업협력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이슈들을 중심으로 대국민 소통 활성화

□ 추진방법

- (농어업계) 권역별 타운홀 미팅, 정책콘서트, 현장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소통 확대
- (농어업계 외부) 오피니언리더 농정 현장탐방, 국민참여 제안대회, 기획 기사, 토크콘서트, 공중파 프로그램 활용, SNS 홍보 등 소통채널 다양화
 - 정책연구와 소통활동의 연계, 분과위 활동 등 위원회 활동결과를 효과적으로 홍보해 시너지 효과 창출과 국민 공감대 형성

IV. '19년 운영계획[안]

1 개혁 의제 중심의 위원회 운영

□ 분과위원회 의제 선정[안]

- (기준) 농정 틀 전환 관련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분과별로 의제 배정
- (농어업분과) 공익형 직불제 중심의 농정개혁, 생태·환경 농어업으로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등 '농정 틀' 전환 관련 의제
 - * 농정 재정지원 및 추진체계, 농어업인 재정의, 농지제도 개선, 친환경축산 육성,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 기후변화 및 미래 농림어업 등
- (농어촌분과)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개선(삶터, 일터, 쉼터), 농산어촌의 다원적 기능에 기반한 경제활동 다각화 방안 등
 - * 농어촌 공간의 계획적 관리, 농산어촌 일자리 창출과 풀뿌리 경제망 구축, 재생에너지 등 농어촌 그린뉴딜, 지방분권화 대응 농어촌정책 거버넌스 혁신 등
- (농수산물식품분과) 공공급식 등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 먹거리 보장 체계 구축,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식교육·식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 수립
 - * 국가먹거리종합계획 수립, 먹거리 소비활동의 조직화와 확대,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 지역순환 먹거리 체계 구축 등

□ 특별위원회 설치 및 의제 선정[안]

- (목적) 농어업·농어촌 미래 전략 및 특정 현안에 대한 논의
- (바른농협위원회) 농협의 정체성 재정립,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농협의 올바른 역할 등
- (남북농림어업협력위원회) 농림어업 분야 남북 협력체계 구축, 남북 농림어업 특구 조성 등 협력 기반 조성
- (농산어촌일자리위원회) 청년농어업인 등 혁신인재 확보, 고령친화적 일자리, 6차산업화·첨단 미래산업·산림 활용 등 특화 일자리 창출

□ 추진일정

- 분과별 의제 선정 및 TF 운영('19.6~)
- TF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과제 추진('19.7~12)

2 소통 및 홍보 활성화

□ 주요 내용

- (범농어업계 정책현장 소통강화) 농정 틀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현장소통 및 의견수렴 활성화
 - (권역별 타운홀 미팅) 범농어업계 및 관련 전문가, 일반국민 등이 참여하여 주요 의제 관련 지역별 논의의 장 마련
 - (토론회 및 전문가 세미나) 주요 의제 관련 토론회 및 정책세미나 개최
- (농어업계 외부와 소통채널 확대)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확산을 위해 농어업계 외부와의 소통채널 다각화
 - (오피니언리더 현장탐방) 문화·언론·방송 등 다양한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로 자문단(서포터즈)을 구성하고, 농어촌 현장방문 후 칼럼·기고 게재 추진
 - (국민참여 정책제안 경연대회) 농정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제고를 위해 대국민 정책제안 전국대회 기획 추진
 - (찾아가는 정책파티) 온라인 사전신청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고 대중의 관심이 높은 주제로 순회 토론회 개최
- (콘텐츠 공유·확산) SNS, 방송·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소통과정을 홍보하고, 농정 이슈에 대한 콘텐츠 확산 추진
 - (온라인) 소셜미디어 채널(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적극 활용하고 유튜브 경연대회, UCC 공모전 등을 통한 국민 참여 유도
 - (언론·방송) 공중파 주요 프로그램 활용, 기획기사 추진 등

□ 추진일정

- 권역별 타운홀 미팅(매분기) 및 토론회·세미나 실시(수시)
- 오피니언리더 현장탐장(매분기) 및 국민참여 정책제안 경연대회(연 1회)
- 농정 이슈 콘텐츠 확산을 위한 SNS 및 방송 홍보(상시)

3 위원회 비전 선포식 개최

- (목적) 농어업계 내외부적으로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중심 농정 개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지지 확보
- (일시) '19. 하반기/ 서울
- (참석) 대통령, 국회, 정부, 농림어업단체,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산학연 등
- (주요 내용)
 - 1부 선포식(대통령 축사, 농특위의 주요 의제 및 추진 방향 소개)
 - 2부 국제 포럼(유럽, 일본 등 국제적 농정 전환 트렌드 인식 공유)
 - 기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의 미래에 관한 전시 등)

IV. 향후 주요일정

□ 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 운영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 위촉('19. 6월말)
- 사무국 공공기관 파견직원 충원 및 임기제 공무원 채용('19. 6~7월)

□ 위원회 워크숍 개최

- 분과위 워크숍 개최('19. 7~8월 중)
- 위원회 워크숍('19. 10~11월 중)

□ 위원회 비전 선포식 개최('19. 하반기)